심 사 보 고 서

[서산시 해미읍성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안]

1996. 2. 8

총 무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일 자 : 1996. 2. 2

나. 제 출 자 : 서 산 시 장

다. 회 부 일 자 : 1996. 2. 5

라. 상 정 일 자 : 1996. 2. 8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이상호)

가. 제안이유

○ 사적 제116호로 지정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해미읍성을 효율적으로 보호.관리하고 방문객 안내.홍보 및 질서유지를 체계적으로 하기위한 기구 설치를 위하여 서산시 해미읍성관리사무소 설치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○ 주요업무로는 해미읍성 보호.관리 및 홍보와 행사유치, 내방객 안내 및 해미읍성내 환경정화 (안 제3조)

○ 사무소의 소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하도록하고, 소속직원을 지휘.감독하도록 규정 (안 제4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본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적 제116호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는 해미읍성의 시설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미면 읍내리 32-2번지 현지에 해미읍성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것으로 판단됨.

4.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

- 없었음

5. 토 론

- 생 략

6. 소수의견

- 없었음

7. 심사결과

- 원안대로 가결

제안번호	제 57 호
의결년월일	1996. . . (제 호)

서산시해미읍성관리사무소설치조례제정(안)

제 출 자	서 산 시 장
제출년월일	1996. 2. 2

서산시해미읍성관리사무소설치조례제정안

의안 번호	57

제출년월일 : 1996. . .
제 출 자 : 서 산 시 장

1. 제 안 이 유

○ 사적 제116호로 지정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해미읍성을 효율적으로 보호·관리하고 방문객 안내·홍보 및 질서유지를 체계적으로 하기위한 기구 설치를 위하여 서산시해미읍성관리사무소설치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.

2. 주 요 골 자

가. 주요업무로는 해미읍성 보호·관리 및 홍보와 행사유치, 내방객 안내 및 해미읍성내 환경정화 (안 제3조)

나. 사무소의 소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하도록 하고,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하도록 규정 (안 제4조)

서산시 조례 제 호

서산시해미읍성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거 해미읍성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산시해미읍성관리사무소 (이하 "사무소" 라 한다) 를 둔다.

제2조(위치) 사무소는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 32-2번지에 둔다.

제3조(업무) 사무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 한다.

1. 일반서무
2. 보조사업을 제외한 예산운영
3. 사적지 및 시설물등 보호·관리
4. 사적지 홍보 및 행사유치에 관한 사항
5. 사적지내 내방객 안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
6. 사적지 환경 정화에 관한 사항
7. 기타 보호 관리에 필요한 사항

제4조(소장) ①사무소에 소장을 두며, 소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.

②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5조(공무원) 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